

##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커브사이드 소매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

###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 확인 표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5 월 13 일 기준

#### 목적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커브사이드 소매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 혹은 “커브사이드 소매 활동에 대한 코로나 19 임시 지침 (Interim COVID-19 Guidance for Curbside Retail Business Activities)” 은 코로나 19 확산 기간 중 커브사이드 픽업 활동으로 소매 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도입하여 커브사이드 픽업만을 운영하는 소매 사업체 소유자/운영자, 직원, 하청계약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은 최소 의무 사항이며 고용주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주정부 경제 재개 1 단계에서 시행된 최선의 공중 보건 조치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이 기반한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의에 따라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커브사이드 픽업 소매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의무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의무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모든 커브사이드 픽업 소매 사업 활동 및/또는 사이트 안전 계획을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경

2020 년 3 월 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 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19 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 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 년 3 월 20 일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출근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6 호를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 년 4 월 12 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기업에 출근 직원에게 페이스 커버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 중 고객 또는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202.16 호를 선포했습니다. 2020 년 4 월 15 일 Cuomo 주지사는 만 2 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리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202.17 호를 선포했습니다. 2020 년 4 월 16 일 Cuomo 주지사는 2 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 202.18 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 수단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 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석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 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기준과 더불어, 필수 기업과 비필수 기업 모두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및 지시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본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 뉴욕주의 책임 있는 커브사이드 소매 활동에 대한 기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산업 안전 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 정부 요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최소 주 표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커브사이드 소매 사업 활동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 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필수 및 비필수를 포함한 커브사이드 픽업 소매 활동에 적용됩니다. 커브사이드 픽업 소매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에 해당)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 등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I. 사람

###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커브사이드 픽업 소매 활동에 대해 출근 인력이 커브사이드 픽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으로 제한되도록 해야 하지만, 점유 확인서에 의해 설정된 특정 지역의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핵심적 활동이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금전 등록기 운영, 물품 이동 및 적재 등)를 제외하고 반드시 직원들이 항상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른 사람과 6 피트 이내에서 접촉할 때 반드시 허용된 페이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른 사람과 예기치 않게 6 피트 이내에서 접촉하는 경우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커버에는 천으로 만들어진 페이스 커버, 그리고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또는 기타 직접 만든 페이스 커버는 일반적으로 작업의 특성 상,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산업 표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방향(좌우 및 서로 마주하는 등)에서 최소 6 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용 중간 청소 및 소독 없이 작업 공간이나 공간을 공유하지 않도록 작업 공간 및 직원 좌석 공간의 수를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또는 공간 내의 거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페이스 커버를 사용하거나 페이스 커버를 대신하여 플라스틱 차단 벽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은 OSHA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스트립 커튼,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커브사이드 픽업 실시를 위해 OSHA 지침인 “테이크아웃 또는 커브사이드 픽업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및 음료 판매업체를 위한 코로나 19 지침”(COVID-19 Guidance for Restaurants & Beverage Vendors Offering Takeout or Curbside Pickup)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주문 및 픽업 지침, 운영 시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문이나 보도에 게시합니다.
  - 가능한 경우 커브사이드 픽업 시 이용할 수 있는 정문 근처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직접 전달을 피하십시오.
  - 시차를 두고 고객이 도착할 수 있도록 픽업 시간을 안내합니다.
  - 고객에게 한 번에 한 명씩 상품을 픽업하도록 권장하고 나머지 고객은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량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페이스 커버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터치리스 결제 옵션을 사용하거나 가능한 경우 미리 지불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보상 카드 및 모바일 장치의 처리를 최소화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물리적 장벽(플렉시 유리 또는 금전 등록기의 파티션 등)이 없는 한 직원이 모든 방향으로 최소 6 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매점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고객과 접촉할 경우 천 소재의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고려하여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밀집된 고밀도 지역, 비품 재배치, 직원 교대 금전 등록기 사용 등).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밀접하게 제한된 공간(소형 창고, 금전 등록기 후면, 좁은 물품 통로, 엘리베이터, 창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허용되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경우는 금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용 공간을 제외하고, 공간 점유율은 최대 수용 인원의 50 퍼센트를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환기해야 합니다(창문 열기, 문 열기 등).

- 책임 당사자는 양방향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구역 및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출근/퇴근 대기장, 건강 검진소, 휴게실, 금전 등록기, 라커룸 등)에 6 피트의 거리를 표시하는 간판 및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소매점 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DOH 코로나 19 표지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의 내용과 부서의 표지 내용과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직장 또는 환경에 맞는 자체 맞춤형 표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직원에게 다음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나 천 소재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 적절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보호 장비를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 19 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고, 지침에 따르십시오.
  - 손 위생 및 청소 지침을 따르십시오.

##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직원 회의, 휴게실, 재고 실 등)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 (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환기가 잘 되는 열린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이 서로 6 피트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공간을 두고, 직원이 교대로 의자에 앉게 하는 등).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러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공간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해 표지와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사용 여부 표시 등).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모임(휴식, 픽업 대기 중 자동차 사이의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6 피트 공간 등)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C. 근무지 활동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밀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있어야 할 직원으로 현장 출근을 제한합니다.
  - 직원 및 고객 이동량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인력을 감축합니다.

-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A/B 팀 분리, 출근/퇴근 시간 겹치지 않게 조정 등).
- 가능한 경우, 배치 활동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에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의 수를 감축합니다(한 직원이 모든 포장을 수행하고 별도의 직원이 배달하는 등).
- 책임 당사자는 개정된 청소 절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매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 비필수 인력의 방문을 금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송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마련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고 구역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 대기 공간(줄서기, 주차 구역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차내에 머물 수 있도록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 상품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이루어지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터치리스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예상되는 활동에 대비하여 최소한 배송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송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등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의 화물을 이송하기 전후(배송 운전자로부터 등)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손을 살균하고, 모든 물품이 적재되면 손을 다시 살균하여 마무리하는 등).

## II. 장소

#### A. 보호 장비

- 책임자는 직원이 6 피트 거리 내에 물리적 장벽(플렉시 유리 등) 없이 고객 또는 동료와 접촉할 때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PPE 외에도 책임 당사자는 근로자가 근무지에 출근해서 있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커버를 조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입수하여 근무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필수 방문자가 필요로 할 경우, 페이스 커버, 마스크 등 기타 필수 PPE를 적절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적합한 페이스 커버에는 천 소재 커버(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등),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얼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페이스 커버는 사용 후 세탁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탁에 대한 내용은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페이스 커버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부과하는 직장 활동에 적합한 페이스 커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도매

무역 활동에 N95 인공 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본인 소유의 적합한 페이스 커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에게 본인 소유의 페이스 커버를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추가 보호 장비(수술용 마스크, N95 호흡기 또는 페이스 쉴드 등)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책임 당사자가 업무 상의 특성에 근거해 직원들에게 더 많은 PPE 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모든 적용 가능한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물, 도구, 레지스터 및 차량과 같은 물체의 공유뿐만 아니라 공유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작업자가 공유하는 물품 또는 자주 만지는 표면과 접촉할 때 장갑(무역 관련 또는 의료용 등)을 착용하고, 접촉 후 손에 소독하거나 씻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전 과정에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페이스 커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PPE 의 올바른 착용, 탈착, 세탁, 폐기법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B. 위생 및 청소

-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코로나 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지침”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을 방지합시다” (STOP THE SPREAD) 포스터 등의 위생 및 청소 지침을 해당하는 경우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청소 날짜, 시간 및 범위를 포함하는 청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의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따뜻한 물, 일회용 종이 타올.
  - 손 살균제: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러한 시설이 실용적이지 않는 곳에서 최소 60 퍼센트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세척/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표면을 사용하기 전후에 직원이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손 위생 의무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소매 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다수가 사용하고 접촉이 잦은 고위험 구역에 대해서는 더욱 자주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적어도 각 교대 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욱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DOH 의 “코로나 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임시 지침” (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욱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사용 인원을 줄임으로써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직원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빈도를 최소한으로 하여,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에 효과적인 것으로 EPA 의 확인을 받은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에 등재된 뉴욕주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재료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 사이에 손 위생 스테이션을 배치 및/또는 일회용 장갑 제공 및/또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출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이러한 청소는 최소한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모든 구역과 접촉이 잦은 표면(자동 판매기, 손잡이, 욕실, 도어 손잡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CDC 지침인 “시설 청소 및 소독” (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은 코로나 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자 발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환자가 사용했던 구역을 폐쇄합니다.
    - 책임 당사자가 영향을 받은 지역을 폐쇄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운영을 종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 청소 또는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정도 기다리십시오. 24 시간 대기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 등 환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일단 적절한 소독을 완료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와 긴밀히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소독 직후 운영 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CDC 의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 19)에 대한 평가 및 검사자” (Evaluating and Testing Persons for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밀접한 접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노출 기간(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과 코로나 19 환자의 임상 증상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기침은 중증 환자에 대한 노출과 유사하게 위험을 증가).
  - 환자가 소매점을 방문 또한 사용한 때로부터 7 일 이상이 지난 경우, 추가 청소 및 소독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반품 상품의 수령 및 재판매 계획을 준비하거나 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 공유 물품(결제 장비 등), 구역(픽업 구역 등) 및/또는 표면(문 등)의 취급을 포함하는 소매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구역 및 물품을 최소한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음식과 음료의 공유(뷔페 스타일 식사 등)를 금지하고, 집에서 점심을 가져오도록 권장하며, 식사를 하면서 사교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재개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과정에서 변경 사항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처음 재개할 때, 직원 수, 근무 시간 및 고객 수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D. 커뮤니케이션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가 선포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방문자 및 고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 가능한 지침, 교육, 표지 등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관된 수단을 확보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소셜 미디어 등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PPE의 사용과 관련하여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커뮤니케이션 및 표지를 통해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이러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에게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적절한 PPE의 사용,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해 소매점 안팎에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III. 절차

### A. 선별 및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매일 건강 검진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선별 절차는 직원이 소매점에 보고하기 전에 가능한 경우 원격으로(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등) 수행되거나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별 심사는 직원이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근로자 및 필수 방문자(고객 제외)에 대한 선별 심사가 필요하며 근로자 또는 방문자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되어야 합니다.
    - (a)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 19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 또는 근거리 접촉했습니다.
    - (b)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c) 지난 14 일 동안 코로나 19 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Symptoms of Coronavirus)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자란 발열, 오한, 오한으로 인한 몸의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러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직원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또는 근무 시간 외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경우 등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매일 실시하는 체온 검사는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는 DOH 지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데이터(체온 정보 등)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검사를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이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직원 또는 소매점에 입장하는 방문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심사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은 고용주가 지정한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 숙지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심사자는 최소한 얼굴 마스크를 포함한 PPE 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페이스 실드 등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 19 양성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선별된 직원은 근무지에 입장할 수 없으며, 지침에 따라 평가 및 검사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연락을 취하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의심 사례에 대해 지역 보건부 및 DOH 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긴밀히 접촉했다고 응답한 직원은 아래에 설명된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매점에 입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해당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 응답을 매일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후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근로자 및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 현장 또는 지역의 다른 개인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동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적절한 PPE 를 사용했거나 비접촉 수단을 통해 실시된 배송의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동 기록에는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밝혀질 경우 모든 접촉자를 식별, 추적,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보건 선별 심사를 작성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이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처 추적을 위해 기록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 직원은 코로나 19 증상 및 접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직원은 14 일 간의 자가 격리를 완료한 후에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시설의 운영 또는 안전에 중요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전염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예방 조치를 실시하면서, 최소 자가 검역 기간에 대한 최신 CDC 및 DOH 기준을 참조하고 지역 보건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직원은 14 일 간의 자가 격리 완료 후 정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시설의 운영 또는 안전에 중요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전염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예방 조치를 실시하면서, 최소 자가 검역 기간에 대한 최신 CDC 및 DOH 기준을 참조하고 지역 보건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장기간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으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직원은 책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상기 확진 프로토콜에 따라야 합니다.
- 직원이 장기간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으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직원은 책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근무 전후 다음 절차를 준수하고 책임 당사자는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1) 정기 모니터링: 직원이 체온 상승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고용주의 산업 보건 프로그램의 감독 하에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2) 마스크 착용: 직원은 마지막 노출 후 14 일 동안 직장에서 항상 얼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3) 사회적 거리두기: 직원은 적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6 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4) 근무지 소독 및 청소: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전자 장비와 같은 모든 곳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직원이 직장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있거나 낮 시간 동안 아플 경우 직원은 위의 절차에 따라 즉시 격리하고 자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B. 추적

- 책임 당사자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코로나 19 확진자라고 통보할 경우 즉시 현지 보건부와 DOH 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접촉하는 직원, 방문자,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현지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직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 중 더욱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48 시간 전 소매점에 입장한 기록이 있는 모든 직원 및 방문자/고객(해당되는 경우) 의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통보는 연방 및 주정부 법에 의거하여 기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지역 보건부는 자가 분리 및 격리를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검사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 또는 근거리 접촉을 했다고 통보받았으며, 추적 또는 기타 메커니즘으로 통보를 받은 직원은 통보를 받은 시점에 고용주에게 스스로 통보하고 만약 직장에서 노출된 경우 의무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을 완료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비즈니스 소유주 및 운영자가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웹 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산업 안전 보건국 코로나 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귀하의 의무를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주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